

● 建 議

◆ 本協會에서는 최근 政府에서 敎育法 및 關聯法規의 改正을 期함에 對하여 그간 圖書館界에 크게 問題되어 오던 重要한 事項인 司書敎師문제에 對하여 本 建議書를 關係部處에 제출하고 이를 貫徹시키고자 推進하고 있는 바 이에 對한 會員 諸君의 協助과 贊成을 바라는 바 입니다.

建議：현행 敎育법상의 사서敎사 문제 및 개정안

1. 문제점

- 가. 현행 敎育법 제79조 제1항(별표 1)의 자격기준에 사서敎사는 1급과 2급의 승진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년 사서敎사로 머물게 된다.
- 나. 일반 2급 정교사가 사서敎사 강습을 이수한 후 사서敎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서敎사로 발령을 받으면 1급 정교사 강습의 기회를 잃는다.
- 다. 또한 사서敎사는 주임敎사 임용규정(문교부훈령 제282호) 제4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주임敎사도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교감 강습도 받을 수 없다.
- 라. 敎育법 제79조(敎원의 種別과 자격) 제1항에서 정교사 준교사 특수학교 敎사 사서敎사 실기敎사 양호敎사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사서敎사를 엄격히 다른 敎사와 동등히 취급하고 있으면서 敎育법 시행령에서는 사서敎사만이 유일하게 초, 중 고등학교 어느 곳에 배치한다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은 법규정상 크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敎사는 갈 곳이 없다.
- 마. 사서敎사는 다른 敎사와 동등한 학력과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많은 제재를 받고 있음으로 모든 敎사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敎育법 정신에 어긋나고 있다.
- 바. 이상과 같은 현행 법상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사서敎사를 지망하는 敎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격을 갖춘 사서敎사도 의욕 상실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을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전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2. 개정안

가. 敎育법 제79조 제1항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敎원의 자격기준)

현		행		개		정		안	
사서敎사	1. 대학졸업자로서 재직중 도서관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적과정을 이수한 자	사서敎사 (1급)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敎사양성 강습을 받은 자	사서敎사 (1급)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또는 사서敎사 자격증(2급)을 소지하고 敎育대학원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대학원 도서관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敎育경력이 있는 자				

			<p>2. 중등학교 정교사(1급) 또는 사서교사자격증(2급)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p> <p>3.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자</p>
		사서교사 (2급)	<p>1.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 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 과정을 이수한 자</p> <p>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양성 강습을 받은 자</p> <p>3.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학을 부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p> <p>4.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p>

※(1) 사서교사(1급)의 자격 규정은 현행 정교사(1급) 자격기준과 동일함.

(2) 사서교사(2급)의 자격규정은 현행 사서교사 자격규정과 동일함. 다만, 3,4항이 증설되었으며 4항은 국민학교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기준임.

나) 현행교육법상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사서교사 배치규정 보완)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양호교사) 18학급 이상의 국민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40조(교원) 제 3항 특수한 기술을 담당하는 교사(이하 “특수교사”라 칭한다)와 양호교사는 전 2항의 정원의외에 이를 둘 수 있다.	제38조(사서교사 및 양호교사).....사서교사 및 양호교사를 각각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43조(교원) 제 3항 특수교사의 양호교사는 전 각항의 정원의외에 이를 둘 수 있다.		제40조(교원) 제 3항의 사서교사 및이를 두어야 한다.
		제43조(교원) 제 3항와 사서교사 및이를 두어야 한다.

다.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가산호봉 규정의 보완)

(동규정 제 7조(가산호봉) 제 1항 별표 6)

현				개정안			
학교별 자격별	가산호봉		비교	학교별 자격별	가산호봉		비교
	유치원 및국교	중등학교			유치원 및국교	중등학교	
1급 정교사	22	16		1급 정교사	22	16	
2급 정교사	23	17		2급 정교사	23	17	
준교사	25	20		준교사	25	20	
교도교사		16		교도교사		16	
사서교사		17		1급 사서교사	<u>22</u>	<u>16</u>	
실기교사	25	20		2급 사서교사	<u>23</u>	17	
양호교사	23	17		실기교사	25	20	
				양호교사	23	17	

3. 개정이유

가. 사서교사의 학력과 자격등이 1급 정교사 또는 2급 정교사와 동일함으로 모든 교사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교육법의 취지에 따라서 사서교사의 자격 기준을 1급 정교사 또는 2급 정교사의 자격과 동일하게 보장함이 타당함.

나. 또한 사서교사와 2급 정교사와는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음으로 이를 법에서도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제 7조 제1항 별표 6에서 사서교사의 가산 호봉과 2급 정교사의 가산 호봉이 동일하게 *17호봉임)

다. 현행 교육법상 사서교사의 진로가 이유없이 전적으로 막혀있음으로 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라. 사서교사의 지위를 다른 교사와 평등하게 보장함으로써 전체 학교도서관발전의 근본적 저해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마. 국가가 지향하는 전인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서는 어린시절부터 자율 학습과 독서 습관을 갖길 수 있도록 하는 발전적 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국민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학교도서관의 육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서교사의 역할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힘

도서관의 평생교육
전통찾는 문화국민